

제301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미래·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

서울특별시 강서구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2024. 1. 31.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미 래 · 복 지 위 원 회

서울특별시 강서구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2024년 1월 31일  
전문위원 권 오 숙

### 1. 회부경위

- 가. 의안번호: 2024 - 18
- 나. 발 의 자: 김순옥 의원 외 5명
- 다. 발의일자: 2024년 1월 16일
- 라. 회부일자: 2024년 1월 22일

### 2. 제안이유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정책 사항을 하나의 조례로 묶어 정비하고, 다자녀가정 의료비 지원사업을 현행 조례에 맞추어 확대하여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다자녀가정 의료비를 정의함 (안 제2조제3항)
- 나. 다자녀가정 의료비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4조의2)
- 다. 부정수급에 관한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 (안 제7조)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건강가정기본법」

나. 해당부서: 가족정책과

다. 기 타: 입법예고(2024. 1. 19. ~ 1. 23.)

## 5. 검토의견

가. 개정취지

-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정책 사항을 하나의 조례로 묶어 정비하고, 완화된 다자녀가정 기준(3자녀 → 2자녀)에 맞추어 다자녀가정 의료비 지원사업을 확대하고자 관련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

나. 주요 제정내용

- 안 제2조제3항에서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다자녀가정 의료비”를 추가하여 정의하였음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생략) <신설>	제2조(정의) ----- -----. 1.·2. (현행과 같음) 3. “다자녀가정 의료비(이하 “의료비”라 한다)”란 다자녀가정의 5세 이하인 둘째아 이상 자녀(이하 “영유아”라 한다)가 요양기관에서 진료 시 납입한 진료에 드는 비용과 처방된 약제 구입 비용을 말한다.

- **안 제4조의2**에서는 다자녀가정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자녀와 동일세대원인 부모 또는 영유아를 사실상 양육하고 있는 동일 세대에 속하는 보호자의 지급 신청이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의료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금액 등 세부내용을 신설함

현행	개정안
<p><u>&lt;신설&gt;</u></p>	<p><u>제4조의2(다자녀가정 의료비 지원)</u></p> <p>① <u>구청장은 다자녀가정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u></p> <p>② <u>의료비 신청대상은 신청일 현재 제2조제1항의 다자녀가정의 부모로 한다. 단, 영유아는 신청대상자와 동일 세대원이어야 한다.</u></p> <p>③ <u>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사망, 이혼, 직업 등의 사유로 영유아를 양육할 수 없는 경우는 영유아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에 속하면서 사실상 양육하고 있는 보호자가 신청대상자가 된다.</u></p> <p>④ <u>의료비 지원대상 영유아의 출생순위는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등록부 등재 순위에 따른다.</u></p> <p>⑤ <u>의료비는 신청대상자의 신청에 의해 지원하며, 지원금액과 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u></p> <p><u>1. 자녀 1인당 연간 최대 30만원</u></p>

현행	개정안
	<p><u>이내. 단, 둘째아에 한하여 연간 최소 20만원부터 최대 30만원 이내에서 셋째아 이상과 차등 지원할 수 있다.</u></p> <p>2. <u>강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동안 발생한 치료 목적의 의료비로 한정</u></p> <p>⑥ <u>의료비 지원대상 영유아가 사망 또는 기타 사유로 주민등록이 말소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한다.</u></p> <p>⑦ <u>의료비 지원대상,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u></p>

- **안 제7조에서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우대 및 지원을 받은 것이 확인될 때, 지체없이 지원을 중단하도록 한 기존 규정에 환수조치도 가능하도록 추가함**

현행	개정안
<p>제7조(우대 및 지원중단)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우대 및 지원을 받은 것이 확인될 때에는 지체 없이 지원을 <u>중단</u>하여야 한다.</p>	<p>제7조(우대 및 지원중단) ----- ----- ----- ----- <u>중단하고</u> <u>환수조치</u>----- -----.</p>

## 다. 종합의견

- 본 개정안은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정책 사항을 하나의 조례로 묶어 정비하고, 저출산 시대의 흐름에 맞춰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된 다자녀가정 기준으로 다자녀가정 의료비 지원사업을 확대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것임
- 저출생 현상의 심화로 최근 3자녀 이상 가구 비율은 낮아지고 있으며, 둘째아 출산 포기 경향도 뚜렷해지는 상황을 반영하여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다자녀 지원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까지 확대하여<sup>1)</sup> 우선적으로 양육·교육 지원 등에 반영하기로 하였음
- 이러한 추세에 따라, 우리구도 2023년 9월 「서울특별시 강서구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완화 기준을 반영하였으며, 이번 개정을 통하여 다자녀가정 의료비 지원사업에 관한 내용을 조례에 신설하여 다자녀가구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것임
- 본 개정안은 2자녀 이상을 둔 가구의 자녀 양육에 체감도가 높은 생활밀착형 지원으로, 대상자의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되며 출산과 육아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인식하고 안정적인 양육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1)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다자녀 지원 기준 완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다자녀가구 지원 관련( '20.12.15. 발표)
(추진방향) 아동의 삶의 질 제고와 가구특성별 격차를 완화하는 생활·주거지원 강화를 통해 모든 아동이 행복한 여건 마련
- 특히, 다자녀 지원기준을 2자녀로 개선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 아동 1인당 실질적으로 보다 충분한 투자가 가능한 구조로 전환

##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종합적인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사회·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중·장기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등 주요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7조의2(인구교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 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결혼·출산 및 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인구교육을 활성화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 5. 23.]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2. 5. 23.>

제21조(연도별 시행계획)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별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 및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생략>...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에 대하여 심층적인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14.>

제32조(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관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의 감면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14.>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과 관련된 교육 및 홍보 등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1. 12. 14.>

## □ 「건강가정기본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가족구성원의 특성과 가정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주적인 가정형성, 가정친화적 환경조성, 양성평등한 가족가치 실현 및 가사노동의 정당한 가치평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혼인과 출산) ① 모든 국민은 혼인과 출산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출산과 육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모·부성권 보호 및 태아의 건강보장 등 적절한 출산·육아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29.>

제21조(가정에 대한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이 원활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가족구성원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지원
2. 소득보장 등 경제생활의 안정
3. 안정된 주거생활
4. 태아검진 및 출산·양육의 지원
5. 직장과의 양립
6. 음란물·유혹·폭력 등 위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
7. 가정폭력으로부터의 보호
8. 가정친화적 사회분위기의 조성
9. 그 밖에 건강한 가정의 기능을 강화·지원할 수 있는 관련 사항